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 규정〉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14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 규정 (안 제17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31.

다. 회 부 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통계연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1,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담배 구매 후 오히려 소매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등 소매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해외브랜드 담배를 국내에서 불법 제조하여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는가 하면,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고, 면세품으로 공급된 담배를 국내시장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며, 불법 제조한 수제담배를 판매한 수제담배업자가 검거되기도 하는 등 불법 담배 판매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는 정상적인 담배 판매 시장을 교란하고 세수 확보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판매인은 소매인 지정 및 취소 기준, 담배 판

매기준, 광고 및 판촉 기준 등 소매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소매인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1.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 규정

(안 제17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u>담배 소매인에 대한 교육</u> (안 제17조의 2) - 담배소매인은 담배 판매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 소매인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항) - 교육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음(안 제3항) 1. 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 소매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안 제4항)
○ <신설>	○ <u>교육 미이수 소매인에 대한 과태료</u> (안 제28조제3항) - 교육을 미이수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담배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매인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제조된 담배가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담배 소매인과 관련된 규정은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소매인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담배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따라 담배 판매질서를 소매인에게 교육함으로써 담배의 판매와 유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고의성 없이 담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소매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참고로 「식품위생법」¹⁾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²⁾은 안전위생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1)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첫째, 이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담배소매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담배소매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한국담배협회는 담배소매인제도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담배소매인제도 관련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담배소매인들은 유선 또는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 소매인제도에 대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관하여도 상담이 가능함.

자율적으로 담배 유통 질서에 대한 안내와 담배소매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주기적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영세한 담배소매인들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둘째, 담배소매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담배 판매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가진 담배 판매 관련 단체는 한국담배판매인회³⁾가 있음. 다만, 그 이외의 전국 단위 담배 판매 관련 단체나 「담배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민법 제32조 및 담배전매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1965년 설립되었으며, 소매인 지정조사, 소매인 권익보호, 영업용품 지원, 청소년 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29개 조합과 1개의 중앙회로 구성됨.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⁴⁾은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업자조합⁵⁾과 한국식품산업협회⁶⁾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음.

공신력 있는 단체와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식품위생교육과 달리 개정안에 따른 담배소매인 교육은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단체나 기관이 부재하여 교육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담배 판매인 단체가 단일한 상황에서 담배 소매인 교육을 도입할 경우, 경쟁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⁷⁾.

4)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5) 동업자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조합 사업의 종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6)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와 협회의 사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 사무는 지자체 이양사무이므로 담배소매인 교육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담배판매인회에서 담배소매인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교육이 필요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7조의2(소매인에 대한 교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담배 판매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 소매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8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현행	개정안
	<u>아니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문의처
02)6788-5150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이하 생략)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

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17. (생략)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